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산업분야 지침서:

종교 집회 장소 및 종교 예식 또는 문화 행사 제공자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IndustryGuidance.aspx)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국장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은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자택격리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감염확산을 저지하도록 명령을 발효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은 아직 온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감염에 따른 질병은 매우 경미한 증상(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에서부터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염 고위험군은 감염자 중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또는 폐 질환 또는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기저 질환자로, 감염 시 입원이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경우, 감염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증상의 잠복기를 포함하여 전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요 사회기반산업 종사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보 산업분야 별 또는 직업 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자 수와 감염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넓은 범주의 근로 환경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감염되거나 전염의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이 다발적인 발발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 환경으로는 병원, 장기 요양 시설, 교도소, 식료품 생산지, 창고, 육류 가공 공장 및 식료품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택격리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들과 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예방 실천 사항입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물리적 안전 거리를 유지합니다,
- ✓ 근로자들과 자원봉사자들(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장소에서)과 회중/방문자들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 ✓ 손을 자주 씻고,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합니다,
- ✓ 해당 내용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 예방 계획안의 기타 사항에 대해 근로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합니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는 새로운 감염 사례를 식별하고, 감염자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개입하는 한편, 공중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감염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이 문서는 종교 집회 장소 및 종교 예식 또는 문화 행사 서비스 제공자(이하 "종교 집회 장소"로 통칭)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근로자, 인턴 및 연수생, 자원 봉사자, 학자 및 기타 모든 유형의 집회 참석자와 승배자, 방문자 등(이하 "방문자" 또는 "회중"으로 통칭)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은 집회 장소가 의무적으로 직접 참여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집회 장소가 종교 서비스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과 동반 질환환자(합병증 환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에게 원격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체적 안전 거리 유지를 실천하더라도, 개인의 신앙 생활을 실천하고자 여러 가정이 한 데 소집되는 회중 환경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광범위하게 전염될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히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인구의 감염률, 입원율, 사망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피트(2미터) 안전 거리로 위험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찬송이나 찬양과 같은 활동을 통해 그 효력이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집회 장소는 반드시 찬송이나 찬양과 같은 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회중을 건물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수용 인원 100명 중 더 적은 인원 수에 맞추어 제한해야 합니다. 지역 공중 보건 책임관은 관할 구역의 주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건강 지표를 고려하여 **실외** 회중 수용 인원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최소한, 실외 회중 인원은 본 문서 내의 기타 관련 실천 안(프로토콜) 외에도 타 가구원들과 최소 6피트(2미터)의 엄격한 신체적 안전 거리 유지 조치만 실천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본 수정 제한 사항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은 이러한 형태의 제한 집행 사항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 보건 사무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행하는 한편, 집회 장소 활동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참고: 본 지침은 집회 장소 및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 준비와 제공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물품 배달, 보육 프로그램 및 주간 보육 서비스, 학교 및 교육 활동, 가정 가사 간호, 상담, 사무 행정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반드시 [코로나바이러스 회복성 로드맵\(COVID-19 Resilience Roadmap\) 웹사이트](#)에 게재된 적용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법령, 규제 또는 단체 교섭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철회하거나 폐지하고자 함이 아니며, 카운티 공중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은 바,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발효중인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CAL/OSHA)¹과 같은 공중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지방 정부 발효 명령이 변경되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최신 지침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Cal/OSHA)의 보다 자세한 안전 및 건강 관련 지침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지침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역 공동체 및 종교 기반 단체](#)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면 가리개 필수 착용

지난 6월 18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은 보다 광범위한 [안면 가리개 지침서](#)를 발효하여 감염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장소 및 직장 환경에서 일반인과 근로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은 근무지 또는 근무지 외 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근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일반 대중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하는 업무/근무;
- 업무 공간 안에 일반 대중 고객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이 방문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근무;
- 타인에게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포장하는 공간에서 하는 업무/근무;
-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근무하거나 보행하는 업무/근무;
- 타인(본인의 가구원 또는 거주 동거인인 아닌 사람)과 방이나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업무/근무
-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대중 교통 또는 보조 대중 교통 차량, 택시 또는 개인 차량 교통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일체. 탑승한 승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해당 규칙 관련 요구 사항 및 면제 사항 전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 안면 가리개 요구 사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에 해당하여 안면 가리개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정책을 별도로 고안해야 합니다. 타인과 빈번하게 접촉해야 하는 근로자가 의학적 사유로 안면 가리개 착용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대한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탈착용이 비제한적인 대안용 가리개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면보호대 쉴드 하단에 드레이프 부착되어 있는 보호구 등의 착용을 권장합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 지침서](#)에 기술된 안면 가리개 착용 면제 관련 사항을 이해하고, [지침서](#)에 따라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하여 비착용을 이유로 배재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해당 면제 사항에 적용되는 고객, 의뢰인, 방문객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근무지 특성 별 계획안

- 모든 시설에서 근무지 특성을 고려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예방 계획안을 수립하고, 모든 근무 영역 및 업무 별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계획안을 구현할 담당자를 각 시설별로 지정합니다.
- 근무지 특성 별 계획안(Workplace Specific Plan)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 지침서](#) 통합하여 개발하고 이에 면제 대상 관리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공중 보건 부서의 연락처 정보를 파악하여, 근로자 또는 회중/방문자 중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발발 시, 해당 정보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 및 근로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계획안을 교육하고 소통하며, 근로자들 및 대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공합니다.
- 근무지의 계획안 준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선 사항을 보완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감염 경로에 업무 관련 요인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추가 감염 사례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계획안을 수정합니다.
- 근무지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 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실행 안(프로토콜)을 구현합니다.
- 감염된 근로자의 밀접한 접촉(15분 이상 6피트(2미터) 이내에 있었던 개인)을 한 개인들을 파악하고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판정 근로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개인들을 격리하는 조치 단계를 실행합니다.
- 이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비 준수 시, 근무지 내 감염자 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임시 휴업이나 영업 제한 대상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주제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정보, 감염 확산 방지 방법,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기저 질환 건강 상태 관련 정보.
- 체온 및/또는 증상 확인을 포함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선별 검사
- 출근이나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기존에 없던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인후통, 울혈, 콧물,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증상이 있는 근로자, 또는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은 후, 격리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 지난 14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은 근로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여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다고 (가령, 격리 중인 상태) 간주되는 경우.
-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은 후, 처음 감염 증상이 발발한 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되었고, 감염 관련 증상이 호전되어 지난 72시간 동안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해열제 복용없이 정상 체온을 회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을 받았으나 감염 증상이 없는 근로자는 최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양성 진단 이후 10 일이 경과한 후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통증이 완화되지 않거나 흉부 압박감이 지속되거나, 혼동 상태, 입술이나 얼굴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최신 정보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에 따라 개수대나 손 씻는 장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 초 동안 비누로 손을 문지르며 (또는 최소 60% 에탄올 함량(권장) 또는 70% 이소프로판올(감독 하에 어린이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함량 손 소독제 사용) 자주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
- 근무 시간 내 그리고 근무 외 시간 모두에 타인과 신체적 안전 거리 유지의 중요성 (이하 신체적 안전 거리 항목 참조).
- 올바른 안면 가리개 착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착용하고 있는 개인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며 개인 보호 장비 (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착용하고 있는 개인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하는 실천사항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 근로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 또는 착용 상태를 조정하기 전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 코, 그리고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 안면 가리개는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되며, 매 교대 후에 세탁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 사무국\(CDPH\) 안면 가리개 지침서](#)에는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면제 상황, 그리고 고용주들이 안면 가리개 착용을 집행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 근무 규정 및 실천 사항을 규정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또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비품 및 PPE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직 계약직 및/또는 자원봉사자 직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들이 자택 격리 기간 동안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권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으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률\(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른 근로자들의 병가 권리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유급 휴가와 직원 상해 보험 지원 정부 프로그램](#) 관련 정보, 그리고 주지사의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제 N-62-20호가 발효됨에 따라 해당 명령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발 근로 관련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 혜택 권리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통제 수단과 선별 검사

- 모든 근로자들의 각 근무조 업무/근무 시작에 앞서, 체온 및/또는 감염 증상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체온/감염 증상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이 타 근로자들과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근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의 적절한 대안으로, 근로자들이 가정에서 자가 선별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조 출근을 위한 외출 전에 선별검사를 수행하고, 상기 직원 [교육 주제 항목](#)에서 기술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또는 회중/방문자는 외출을 삼가고 자택에 머물도록 독려합니다.
-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모든 필요 장비를 제공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업무/근무 특성에 따라, 안구 보호 및 장갑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집회 장소는 근로자들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여, 자주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타인들의 감염 증상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이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와 자원 봉사자는 체액으로 오염된 물건을 처리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원 봉사자 등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에 기술된 바](#)에 적시한 격리 기간 내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또는 감염자와 접촉을 한 개인의 가정이나 가족을 방문하거나 출입해서는 안됩니다.
- 집회 장소는 반드시 잘 보이는 위치나 예약 확인문 등 눈에 잘 띄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회중과 방문자들이 반드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최소 20초 동안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실천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문자 메시지, 이메일, 뉴스 레터 등을 활용하여 회중/방문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 사항을 전달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중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증상이 있거나 몸이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우 외출을 삼가고 자택에 머물기, 안면 가리개 착용하기, 신체적 안전 거리 유지하기, 손 씻기 및/또는 소독하기, 그리고 지침 예절 준수하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회중/방문자들에게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도록 종교 예식 도중이나 손님 맞이 인사 시간에 안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회중과 방문자들에게 안면 가리개를 잊지 말고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가능하다면, 지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집회 장소에 도착하는 회중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체온 및/또는 감염 증상 선별검사를 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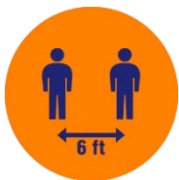
청소 및 소독 실행 안(프로토콜)

- 로비, 복도, 회당, 회의실, 사무실, 도서실, 그리고 학습 휴게실과 같이 다수가 모이고 이용하는 공간과 계단, 계단 통로, 승강기, 난간 및 승강기 제어실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구역을 매일 철저히 청소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표면은 문 손잡이, 화장실, 손 씻기 시설, 강단 및 연단, 헌금 상자 또는 접시, 제대, 신도석 및 좌석 구역을 등을 포함하여 자주 소독합니다.

- 개인 근무/업무 공간은 책상이나 칸막이 방(큐비클)을 포함하여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며 필요한 청소 비품을 공급합니다. 직원 근무조 시간 동안, 근로자들이 청소를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근무 시간 동안 청소 업무를 직무의 일부로 배정합니다.
- 종교 집회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가령 기도서, 방석, 기도용 깔개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가능한 모두 장소에서 일회용 비품 또는 디지털 사본을 제공하거나 회중/방문자가 개인 물품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당부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와 비품은 전화기, 사무 기기,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공유를 삼가십시오. 절대로 개인 보호 장비(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다음과 같은 해당 물품이나 비품을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경우, 사용 후 또는 다음 사람들이 이용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더 빠른 순서대로 물체 표면을 적절한 세척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공유 사무 기기 (복사기, 팩스기기, 프린터, 전화기, 컴퓨터 자판, 스테이플러 등) 및 종교 집회 공유 물품 등.
- 위생 시설은 항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여분의 비품을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분의 비누, 종이 타월 및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손 씻기 시설을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손 씻기 습관 실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 마이크와 스탠드, 악보 보면대, 악기 및 기타 강단과 연단에 있는 물품들은 사용 후와 사용 전에 소독합니다. 부드러운 다공성 표면, 특히 폼 머플러와 같은 제품은 장비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적합한 소독 단계를 결정합니다.
- 회중/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다공성 표면이나 매일 여러 차례 집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일회용 좌석 덮개(시트 커버) 사용을 고려합니다. 사용 후, 좌석 덮개를 폐기하고 교체합니다. 바닥에 앉을 때 사용하는 베개는 일회용 또는 세탁용 덮개를 제공하고 매번 사용 후 교체/세척합니다.
- 가능한 모든 장소에, 가령 회의실, 로비 및 승강기 이용 공간과 같은 출입구 및 밀접 접촉 구역에 비접촉 소독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합니다.
- 업장에서 소독 제품을 선택할 때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비 안전 승인을 받은 [환경 보호국 \(EPA\)-승인](#) 목록에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 설명서에 따라 사용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 당 5 큰 술갈 분량), 또는 표면 청소 용액으로 알코올 함량이 최소 70%인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학 위험 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제조업체의 사용 설명 지시에 따라, 환기 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위생관리국(Cal/OSHA)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합니다. 청소제품이나 소독제품을 사용하는 근로자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은 제품 사용에 필요한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이 권장하는 천식 방지 청소 방법에 따라,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종교 의복과 속옷/침구류는 각 서비스 또는 행사 후, 가장 고온수로 설정하여 세탁합니다. 회중/방문자에게 개인 의복과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개별 보관 용 가방이나 봉지를 지참하도록 당부합니다. 근로자, 회중 및 방문객은 타인이 착용/사용한 속옷/침구류나 신발 등을 처리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회중에게 현금 접시와 같은 물품을 돌리거나 신도들끼리 이를 전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개폐가 필요 없고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금고와 같은 대체 방안을 모색하여 사용합니다. 회중/방문자가 비접촉 현금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 구현을 고려합니다.
- 회중/방문자가 앉거나 무릎을 꿇도록 지정된 공간 사이의 보행로를 표시하여 바닥 부분 중 발을 밟은 곳에 다른 사람이 머리를 대지 않도록 합니다.
- 회의 및 서비스 도중에는 문/창을 여는 등(날씨가 허락하는 한)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여 신선한 외부 공기를 유입합니다.
- 가능한 경우, 바닥 청소 시 빗자루로 쓸거나 기타 병원체를 공기 중에 분산시키는 청소 방법을 피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고성능 미립자제거 여과기(HEPA)를 장착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 이동식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가능한 경우, 건물의 공기 정화 장치는 최고의 효율성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사무실 및 기타 공간의 외부 공기 유입 및 환기량을 증대시키는 기타 수정 안을 고려합니다.



신체적 거리 두기 지침

- 종교 집회 장소는 가능하면 모든 때에 지속적으로 대체 방안(예: 인터넷 라이브 및/또는 녹화 방송 스트리밍, 전화, 드라이브-인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직접 회의나 서비스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모든 때에 면 실외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 근로자와 회중/방문자 간 간격은 최소 6피트(2미터)의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합니다. 가령 물리적 칸막이 또는 시각적 신호(예: 바닥 또는 신도석에 사람이 앉고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가구원들의 회중/방문자 간 간격은 6피트(2미터) 이상의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좌석 및 서 있는 공간을 재배치합니다. 좌석을 한 줄씩 건너 배정하여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동일한 가족 가구원은 동석이 가능하지만, 다른 가구원들과는 최소 6피트(2미터)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집회 활동 중에 회중 간 안전 거리 유지를 단속하도록 전담자를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회중/방문자가 가능한 한 공간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간을 단축합니다. 가령 강연 시간의 단축, 회중/방문자에게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 가정에서 의복을 착용하도록 당부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종교 집회 장소는 가능하면 모든 때에 정기 집회, 회의 등을 외 시간에 방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예약 시스템 구현을 고려하여 한 번에 소집되는 회중/방문자 인원을 제한합니다. 가령 디지털 플랫폼 또는 기타 유형의 도구 사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회중/방문자가 특별히 자주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특정 인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소집되는 집회의 경우, 동일한 인원들끼리 모이도록 장려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전염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모이는 집회 시간을 고려하여(매일 또는 매주) 매 회 더 적은 인원의 방문객이 회의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본 지침에 기술된 바에 따라 집회 소집 전 후 회의 공간을 청소해야 합니다.
- 대규모 회중/방문자가 모이도록 장려하거나, 이동해야 하거나,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활동은 콘서트, 대규모 휴가 및 축하 행사 및 추모를 포함하여 모두 중단합니다.
- 어린이들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단위에 귀속되어야 하고 시설 방문 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른 가족의 돌봄을 받는 어린이들과 교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 놀이 구역을 폐쇄하고 어린이들이 최소 6피트(2미터)의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활동과 서비스는 중단해야 합니다.
- 회중/방문자는 동일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신체적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표면 접촉을 삼가고, 몸이 좋지 않으면 시설에 머물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 종교적 및/또는 문화적 교류의 목적으로 손을 잡는 것과 같이 접촉을 해야 하는 행위는 동일한 가구원들 간에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봉사자를 지정하여, 방문객들이 종교 집회 장소에 도착하면 로비나 공용 공간에 모이지 않고 회의실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방문자/가족 가구원들과 최소 6피트(2미터)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안내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회중/방문자들에게 부탁하여 가족 단위로 이동함으로써 집회 장소에 도착하고 출발하는 인원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회중/방문자의 환영인사나 환송인사는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인원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중단, 연단, 회의실 등에서 순서대로 나누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회중/방문자가 시설에 출입할 때 보안 및 안전 실천 안에 따라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 대에는 출입문을 열어 두거나 닫히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 공동 사용 구역은 휴게실, 간이 주방, 현관 입구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모이거나 교류할 수 있으니 출입을 제한하거나 폐쇄합니다. 해당 공간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물리적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탁자/좌석을 배열합니다..
- 공동체/종교 의식에 사용하는 세례반, 싱크대 및 그릇과 성수 용기와 같은 물품은 비치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단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을 비우고 사용 후 물을 교체합니다. 오염 물질이 사방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 회중, 방문자 등은 안면 가리개, 안구 보호대 및/또는 안면 보호대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로 눈, 코 그리고 입을 가리고 보호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보호 장비는 보호대와 안경을 포함하여 매번 사용 전후 올바르게 소독해야 합니다.
- 세안/목욕을 필수로 하는 활동의 경우, 가능한 모든 때에, 관행을 일부 수정하여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도록 제한하고 세안/목욕 시설을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시설 출입에 앞서 가정에서 필요한 세안/목욕을 하도록 독려합니다.
- 연단과 연사 구역, 사무실 공간, 소회의실, 대회의실 등을 재구성하여 참석자들 간에 최소 6피트(2미터) 안전 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복도의 통행 방향과 보행자 통로를 설정하고,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출입하는 경로를 별도로 지정하여 이동하는 사람들 간에 물리적인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 시 서로 근접하게 되는 확률을 줄입니다.
- 한 번에 승강기에 탑승하는 인원 수를 제한합니다. 해당 정책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게시합니다.
- 실천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사무실, 회의 공간 등에 한 번에 모이는 근로자 그리고 집회 참석자/방문자 수를 제한합니다. 가령 일정표를 작성하거나(예: 시작/종료 시간에 시간차 두기), 현장 보고일자를 하루 간격으로 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집회 장소로 복귀하거나 또는 가능한 경우 지속적으로 재택 근무를 지원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중/방문자 및 다른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촉하는 직무 옵션을 요청하는 근로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직무 수정을 고려합니다(예: 안내 봉사를 맡았던 직원에게 사무실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행정 관리 업무 수행을 재택 근무제로 전환).
- 직원 휴식에 시간 차를 두어, 고용 임금 및 시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안전 거리 실행 안을 실천합니다.
- 비필수적 요구 사항인 경우, 이동없이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원격 회의를

진행하도록 독려합니다.

- 회중/방문자를 위한 편의 용품과 시설은 전시용 안내 책자와 책장, 셀프 서비스 품목을 포함하여 제공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합니다. 전자상으로 품목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한 번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여 신체적 안전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근로자, 회중, 방문자 등이 악수, 포옹 또는 유사한 형태로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신체적 안전 거리를 해지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거나 다른 인사 방법을 사용하도록 상기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재구성하고 적절한 구분선으로 분리합니다(예: 일부 구역 개방 및 폐쇄). 드라이브-인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 주차 차량 간격을 6피트(2미터) 안전 거리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 노인 및 동반 질병환자(합병증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간접 서비스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교 집회 장소 고려사항

- 셀프 서비스 음식 및 음료 제공을 중단합니다. 교차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음식나누기(potlucks) 또는 유사한 가족 형태로 음식이나 음료를 나누는 행사를 갖지 않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모든 때에 단품 용기,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제공합니다. 음식을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자원 봉사자는 손을 자주 씻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찬송(예행 연습, 미사/예배 등), 찬양 등은 감염된 사람이 분출한 비말을 통해 전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타 관행 예식과 공연을 모두 중단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가령 인터넷 스트리밍) 방법을 고려하여 개인 집회 참석자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이러한 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공동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종교 예식 수행 과정이,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에 고무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관행 수정을 고려합니다. 가령, 성물에 입맞춤을 하는 의식을 중단하고 의례에 참여하는 인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컵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고, 영성체를 모실 때 손바닥 위 대신 혀 위에 받거나, 미사/예배 시작 전에 성찬식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포장하여 제공하는 등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서를 준수합니다.



장례식 고려 사항

- 장례식이나 경야에는, 가능한 경우, 조문객 인원을 제한하거나 문상 시간에 간격을 두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본 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청소 및 소독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때에, 조문객들에게 근로자, 자원 봉사자, 그리고 고인과 신체적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상기시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으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목욕시키거나 수의를 입히는 경우, 종교적 또는 문화적 관행을 수정하여 [캘리포니아 공중보건 사무국\(CDP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침을 준수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시신을 목욕시키거나 수의를 입히는 행위가 종교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관행이라면, 장례식장 직원 및 가족들과 협력하여 감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체액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눈, 코 및 입을 보호할 수 있는 안면 보호막과 같은 추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 문상객의 규모, 이동, 장례 의식 활동의 제한 등에 관한 해당 지역 지침을 참조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상기 기술한 종교 집회 장소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장례식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 사항과 수정 사항을 고려합니다.

¹감염 취약 인구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시설은 모든 [캘리포니아 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사무국\(CDPH\)](#)이 고지하는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변경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